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연월일 : 2017. 5. .

발 의 자 : 이 봉 수 위원 외 6인

## **1. 개정사유**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·시행(2016.11.30)됨에 따라 이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 **2. 주요내용**

- 가.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인용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 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6조).

## **3. 예산조치 : 필요없음**

#### **4. 입법예고 : 필요**

#### **5. 관련법규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
- 「지방회계법」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

#### **6. 개정조례(안) : 별첨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부터 제53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84조 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6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